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 기준등 규정 (제12조)

나. 해수욕장 근무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

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제14조)

3. 관련법령 및 조례

가. 지방자치법제127조 (사용료)

나.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하여 설치한 편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원가산출액과 다른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의 샤워장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02. 5.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